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08.10.14 (화) 10:30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8년 10월 6일

나. 회부일자 : 2008년 10월 7일

3. 제안 이유

- 다양한 분야에서 도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4. 주요내용

- 가. 개념정의 신설 (안 제2조 제18호)
- 나. 직제개편에 따른 국장 명칭변경(안 제17조제1항)
- 다. 지원범위 확대 (안 제31조의2)
- 라. 지원절차 규정 신설 (안 제32조)
- 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 변경(안 제33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2004년 11월 26일 조례 제2831

호로 제정되어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 2006년 12월 22일 전문개정, 2007년 10월 5일과 2008년 4월 4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중에 있는 조례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운영상 제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2조제18호의 '그외 기업'에 대한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33조제1항의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중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에서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것은 특별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운영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그 외 기업”이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지원 대상 기업과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그 외 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그 외 기업이 별표3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 2. 도내 소재 기업이 증설 투자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구입비,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 그 최고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지원절차) 제27조부터 제31조의2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지원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 완료 후 1일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그 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제31조의2 관련)

-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고
- 1일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며
- 투자 완료 후에도 1일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 ~ 17. (생략) <신설></p> <p>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u>경제투자본부장</u>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u>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담당과장</u>이 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1. ~ 17. (현행과 같음) 18. “그 외 기업”이란 제 27조 부터 제31조까지의 지원 대상 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u>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u></p> <p>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 -----<u>경제통상국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그 외 기업에 대한 지원) ① <u>도지사는 그 외 기업이 별표 9의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u>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u></p> <p>2. <u>도내 소재 기업이 증설 투자하는 경우</u></p> <p>② <u>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대입비, 임대료,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구입비,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 22조를 준용하되, 그 최고 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지원한도)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 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투자기업 2.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p>	<p>제32조(지원절차) 제27조부터 제31조의2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지원한다.</p> <p>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 -----.</p> <p>1.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p>

관련법령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08.1.24, 산업자원고시 제2008-6호)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 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2.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인 이상인 경우
3. 해당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개정 2008.2.22>)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4. 삭제 <2007.2.28>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